경제관계장관회의
14-22-3

공 개

#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

2014. 6. 17.

관계부처 합동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

## 순 서

Ⅰ. 검토 배경 ····· 1

Ⅱ. 현황 및 문제점 ····· 2

Ⅲ.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방안 ····· 5

1. 합리적 튜닝규제 개선 및 보완방안 마련 ····· 6

2. 튜닝 지원제도 기반구축 ····· 8

3.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····· 12

Ⅳ. 향후 실행계획 ····· 13

《참고자료》 ····· 14

# Ⅰ. 검토 배경

□ **세계 튜닝시장 규모**는 **100조원**('12 기준)으로 최대 시장인 미국을 위시하여 **연평균 5%**씩 성장

* 주요국 튜닝시장 규모 현황('12)

| 미국 | 독일 | 중국 | 일본 | 한국 |
|---|---|---|---|---|
| 35조원 | 23조원 | 17조원 | 14조원 | 0.5조원 |

출처 : 자동차 튜닝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(교통안전공단-자동차안전학회, '12)

□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*이나 **튜닝시장은**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**규모**(0.5조원)**가 매우 작음**

* '13년 자동차 생산량(만대, 비중) : 중국 2,211(25.3%), 미국 1,104(12.6%), 일본 963(11.0%), 독일 586(6.7%), 한국 452(5.2%)

○ 자동차 전체 시장규모 대비 튜닝시장 규모도 미국은 **11%**(35조/320조)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**1.6%**(0.5조/30조)에 불과하여 **활성화도 낮음**

* 튜닝부품 업체는 1,600여개, 튜닝숍은 500여개로 영세한 규모

□ '13.8월 **'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'** 발표(국토부), '14.3월 **'규제개혁 장관회의'** 이후 범 정부 차원의 튜닝산업 진흥대책 필요

* 브라부스('13.10), AC 슈니처('13.11) 등 해외 유명 튜닝업체도 국내 진출

○ 최근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맞아 **청년층을 중심**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외관을 취향에 따라 변경하려는 **수요가 꾸준히 증가**

* 차량용 악세사리, 서스펜션 등 성능개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

* 튜닝 동호회 회원 수(G 클럽) : 2만5천명('08) → 5만6천여명('14.5)

◇ 규제 완화,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**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,** 중소부품·정비업체 중심의 **새로운 일자리** 창출

○ ('12) 0.5조원/1만명 → ('17) **2.7조원/2만명** → ('20) **4조원/4만명**

* (근거) 자동차 튜닝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('12년, 교통공단·자동차안전학회)



# Ⅱ. 현황 및 문제점

## 1. 현 황

□ **튜닝의 정의 및 분류**

○ (정의) 자동차의 **성능향상**이나 **외관단장**을 위한 **구조·장치 변경** 또는 **부착물 추가** (자동차관리법 제2조)

○ (분류) 목적에 따라 **빌드업·튠업·드레스업** 튜닝으로, 주체에 따라 **소비자·제작자** 튜닝으로 분류

* 제작자튜닝은 자동차제작자가 옵션 주문을 받아 튜닝하여 소비자에게 판매

< 튜닝 분류 >

| 목적 | Build Up Tuning | Tune Up Tuning | Dress Up Tuning |
|---|---|---|---|
| 사례 |  |  |  |
| 개념 | 특수장치 부착, 구조변경 | 엔진·주행 장치 변경 | 외형변경, 악세사리 부착 |
| 특징 | 용도에 따른 맞춤형 변경 | 성능 향상이 목적 | 취향에 맞게 꾸밈 |

| 주체 | 소비자 튜닝 | | 제작자 튜닝 |
|---|---|---|---|
| 사례 |  브레이크라이닝 |  서스펜션 |  |
| |  타이어 |  등화장치 |  |
| 개념 | 소유자가 취향에 따라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외관·성능 등을 변경 | | 고객요구에 대응, 양산형 모델보다 고성능의 튜닝모델을 별도제작 |
| 특징 | 안전과 밀접한 사항은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안전성을 보장 | | 제작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여 안전성 보장 |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2. 튜닝산업 비활성화 원인 분석

### 1 엄격하고 까다로운 튜닝 규제

○ 자동차의 7개 구조 중 **2개**, 21개 장치 중 **13개** 항목의 변경은 **승인 필요**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)

* 총중량 증가, 변경 전보다 안전도 저하(예: 산악용카 변경) 등은 금지

➪ (미국) 안전기준(FMVSS)을 준수하면 **자유롭게 튜닝 가능**

➪ (독일) 정부인증(KBA)을 받은 부품은 **폭 넓게 튜닝 허용**

○ **승인 절차가 복잡**(5단계)하고 관련규정에 대한 홍보도 부족

### 2 제도적 기반 취약

○ 그간 **튜닝의 법적개념**이 없다가* 최근 도입('14.1 자동차관리법 개정)

* 튠업튜닝(구조장치변경) 위주로 규정, **드레스업 튜닝(부착물)은 미규정**

○ 튜닝 부품인증·보험상품*·보증수리** 등 **소비자 보호장치 미비**

* 자동차보험사는 튜닝 부품가액이 현저히 높을 경우 인수를 거절하거나, 튜닝부품 등 가액이 표준화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

** 국내·외 제작사는 순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부품(튜닝부품) 사용에 대해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 운영(도요타는 성능이 우수한 부품은 A/S 가능)

➪ (미국) 애프터마켓 부품정보도 보험 처리, 무상보증 거절된 부품 등 고장을 보증하는 보험상품(extended warranty 보험)

➪ (독일) 중요 튜닝사항은 보험사에 통보 의무화

○ **제작자 튜닝의 활성화**를 지원하는 **별도 인증제도 부재**

- 완성차(대기업)-특장차(중소기업) 업체간 안전기준 준수에 대한 **책임한계 불명확** → 반제품 상태의 자동차(마이너스 옵션) 제작·판매 곤란

* 국내는 냉동탑차·엠블란스 등 특수차 제작을 위해 적재함·의자 등이 모두 구비된 완제품 형태로 구입·변경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자원낭비 발생



➪ (미국) 제작단계별로 자기인증라벨 부착 및 인증책임 의무

➪ (유럽) 제작단계별로 형식승인을 받고 정보제공* 마크 부착

* 제작자 명, 차대번호, 허용 총중량 및 허용축중 등

- 특장차 업체(약 1,200여개)는 자기인증 시설·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**성능시험대행자**(자동차안전연구원, 화성 소재)에게서 **기술검토·안전검사** 후 자기인증 취득 → 지방 업체는 많은 시간·경비 소요

- 수제 스포츠카 등 **소량생산 자동차**도 충돌시험 등 대규모 양산 자동차의 **인증기준 모두 시험** → 소규모 제작사는 개발을 시도하기 곤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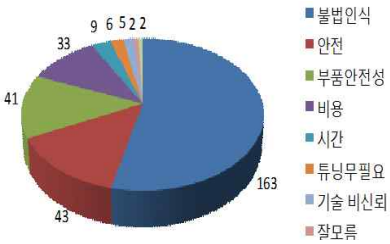
➪ (유럽) 소규모 제작 자동차(연간 천대 및 차종별 500대 이하)는 대부분의 파괴시험(충돌)을 면제하고 비파괴 시험으로 인증

➪ (일본) 양산차는 형식승인제도, 소규모 제작 자동차는 신고제도로 분리·운영

### 3 불법튜닝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

○ 튜닝은 **불법으로 인식**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만연한 실정

* '14년 교통공단 설문조사(257명)




- 일부 **무분별한 튜닝이 합법적 튜닝까지 불신**(악화가 양화를 구축)

* 불법튜닝 적발건수(관계기관 합동) : 23,634('11) → 17,494('12) → 20,948('13)

➪ (미국) 소비자가 튜닝한 경우 정기검사시 신고하고, **불법튜닝**은 경찰에 적발되면 **강력 처벌**(벌금, 원상복귀)

➪ (독일) 정기검사시 불법튜닝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벌금, 원상복귀 및 재검사 필요

○ 튜닝 활성화, 불법튜닝 계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**튜닝협회**도 **이원화**(국토부-튜닝협회, 산업부-튜닝산업협회)되어 역량 결집에 한계

## Ⅲ.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 방안

**비전** :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을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

**목표**
- ◈ 합리적 튜닝규제 완화로 튜닝시장 활성화
- ◈ 체계적 튜닝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
- ◈ 건전한 자동차 튜닝문화 조성

| 정책방향 | 세부 추진과제 |
|---|---|
| 튜닝규제 합리적 개선 | 1. 안전·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<br>2. 합리적·최소한의 규제<br>3. 튜닝 승인절차 간소화<br>4. 규제완화 보완방안 마련 |
| 튜닝산업 지원제도 기반구축 | 1.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<br>◆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<br>◆ 튜닝보험상품 개발<br>◆ 튜닝카 보증거부 제도개선<br>2.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 정비<br>◆ 제작사 튜닝을 위한 별도 인증제 도입<br>◆ 모범 튜닝업체 및 전문인력 양성<br>◆ 튜닝(부품) 온라인 쇼핑몰 및 수출 지원<br>◆ 중소튜닝업체 세제 및 자금 지원<br>◆ 튜닝산업 인프라 구축<br>◆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 지원 |
|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| 1. 튜닝 붐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<br>2. 튜닝업계의 역량 결집위한 협회 통합 |



## 1. 합리적 튜닝규제 개선 및 보완방안 마련

◇ **안전과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** 내에서 규제 완화

◇ **규제완화에 상응하는 보완방안을 마련**하고, **안전과 직결**되는 **핵심 규제**는 **유지 또는 강화**

1 그동안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**구조변경을 금지**해 왔으나 앞으로는 **승인을 받으면 가능**하도록 허용 (국토부)

○ **여가형 튜닝**(예: 캠핑카)과 **생계형 튜닝**(예: 푸드트럭)은 안전 검토 등을 거쳐 허용





* 캠핑카 : 소화기, 환기장치, 오수 집수장치 등 설치하면 승인 가능

* 푸드트럭 : 최소한의 적재공간(0.5㎡)을 갖추고 안전·환경시설을 설치

○ 특수한 장치(냉동기, 파워게이터, CNG연료통 등)를 설치하는 경우에 **총 중량 증가**에 대한 **최대 허용치**를 보다 확대

* 승용 및 소형·경형자동차 : +60㎏ → +120㎏, 중형자동차 : +100㎏ → +200㎏

○ **도로 작업용 자동차**의 유도표시등, 에어댐퍼 설치 등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허용

2 승인을 받지 않는 **면제 대상 확대** (국토부)

* 화물차의 포장탑, 바람막이,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은 '13.12월 우선 허용

○ 부품자기인증·튜닝부품인증을 받은 **등화장치***(전조등 제외) 등

* 방향지시등, 안개등, 주간주행등, 차폭등, 후미등, 제동등 등 총 11개



방향지시등



주간주행등

3 **튜닝 승인절차 간소화** (국토부)

○ **인터넷 구조변경 신청**(www.cyberts.kr)을 적극 홍보하고, 간단한 변경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설계도 제출을 생략

○ 통상 3~7일 정도 걸리는 승인서 교부는 **당일 처리**로 단축하고 **완료증명서**도 공단 방문 없이 검사정비이력시스템에 입력

4 **규제완화 보완방안 마련** (국토부, 경찰청, 지자체)

① **불법튜닝 합동단속 및 처벌 강화** (경찰청, 지자체, 교통안전공단)

○ 합리적인 규제를 위반한 불법튜닝은 **관계기관 합동단속**을 통해 근절되도록 노력

* 연2회 실시(5월, 10월), 경찰청·지자체·교통공단 합동



- 불법튜닝 예방을 계도하기 위해 **홍보포스터**도 제작·배포(버스 정류장 등에 부착)

○ 운전자 위주 단속에서 **불법부품 제작·정비업체**까지도 단속하고 불법 튜닝부품 제작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등 **벌칙 강화**

* 불법부품 판매중지 명령 및 형사처벌 조항 신설(자동차관리법 개정, '14.1)

- 검사업체가 불법 튜닝을 감추어 주지 못하도록 VIMS(자동차 검사관리시스템)에 입력된 사진을 통해 불법의심차량은 **추적조사** 실시

② **안전·환경**에 직결되는 **합리적 규제는 유지** (국토부)

○ 화물차 적재함 문짝 제거, 광축자동조절장치 없는 **HID 전조등 장착** 등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거나 **배기가스 저감장치 제거** 등의 항목에 대한 **규제는 유지**

※ 특히 **불법 전조등** 및 **소음**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많이 제기('14 교통공단 조사)

* 불법튜닝 경험 : 불편(90.8%), 못 느낌(9.2%)

* 불편사례 : 시야방해(57.2%), 소음(34.6%), 기타(8.2%)






## 2. 튜닝 지원제도 기반구축

### 가.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

1 **튜닝부품 인증제 도입** (국토부)

○ 튜닝부품의 성능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인증제 시행 ('14.1 자동차관리법 근거 마련)

- 자동차튜닝협회가 **인증제를 자율 운영***하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**정부가 철저히 관리·감독****




<일본 사례(NAPAC)>

* 하자발생시 A/S 책임, 인증부품 사후관리(COP, 생산적합성조사) 시행 등

** 문제발생시 정부지원 중단 및 정부가 튜닝협회의 인증제도 공신력 부인 등

- 금년 중 1단계로 소음기, 휠 등 **5~7개**의 튜닝부품 인증 추진

○ 튜닝부품의 성능시험,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**튜닝부품 인증관리 시스템 구축** (국토부, 산업부)

2 튜닝 부품·자동차의 손상을 보장하는 **튜닝보험상품 개발** (금융위)

○ **위험단위별 요율체계를 제시**함으로써 보험사가 튜닝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·기반 마련

* 구체적 보험가액 산정과 보상을 위해선 튜닝차량 및 부품의 가액에 대한 표준화(튜닝부품 인증제)가 우선 시행 필요

3 튜닝카에 대한 **제작사의 보증거부 관행 제도개선** (국토부)

○ 튜닝부품(인증부품에 限) 사용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기 어렵도록, 튜닝이 고장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**제작사가 입증**하도록 하거나 (자동차관리법 개정), 업계 공동가이드라인 마련 유도

* 미국 제품보증법(레몬법) 사례 : Non-OEM 부품 사용하더라도 보증을 회피하지 못하나, 허용되지 않은 튜닝에 대해서는 제작사에 무상보증을 면책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나.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 정비

### 1 제작사 튜닝을 위한 별도 인증제 도입 (국토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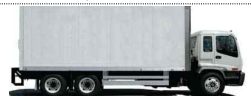
○ 수요가 다양하고 수출경쟁력도 있는 특수차 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**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*** 도입('15.12월)

* 미국, EU는 완성차와 특수차 업체의 제작 단계별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별도 인증

* 한국은 제작단계별로 책임소재 불명확



1차 인증: 엔진, 차체관련 안전기준 인증



2차 인증: 탑차 설치관련 안전기준 인증

- 자기인증 능력이 미흡한 **특장차 업체**의 제작차량에 대한 기술 검토 및 **안전검사** 등을 **지원**

○ 수제 스포츠카, 리무진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**별도 인증제** 도입('15.12월)

- 파괴시험 면제 내지 안전검사만으로 자기인증 가능토록 개선(EU 등 선진국 제도 참조)

- 소규모 제작자의 안전검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**검사비용 일부 면제**



한국 최초 수제스포츠카

### 2 완성차 업계의 참여 확대 (산업부, 국토부)

○ **완성차 업계 중심의 자발적 노력 추진**

- 완성차 업계는 現 튜닝 브랜드(현대차 Tuix, 기아차 Tuon)의 다양한 **튜닝 패키지 보급방안 검토**를 통해 공급측면의 시장 창출 추진

* (예시) 신차 발매시 다양한 튜닝 패키지 동시 출시, 보급형 외 고급형(엔진, 현가 등) 모델 확대 등



벨로스터 알파인

- 완성차 업계의 튜닝브랜드 활성화 등 **튜닝산업 활성화 운동 추진**

- 정부는 **완성차 업계 추진상황 모니터링** 등으로 참여 확대 유도

* 최근 현대·기아차는 튜닝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 오픈(튜익스몰, 튜온몰)



○ **완성차 업계와 튜닝부품업계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**

- 완성차업계-튜닝업계간 「**기술협력포럼***」 **지원**을 통해 완성차업계는 **우수한 튜닝업체를 발굴**하고 튜닝업체는 **기술사업화 기회** 확보

* 現 '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산업 포럼(정부지원)에 튜닝분과를 포함하여 확대

- 영세한 튜닝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**현장 기술지도** 시행

* 주요공정 개선, 생산성 향상방안 및 불량률 저감방안 지도, 직원 기술교육 등

### 3 모범 튜닝업체 육성 및 튜닝 전문인력 양성 지원 (국토부)

○ **모범 튜닝업체**(Best Tuner)를 선정·인증마크를 수여하고, **정비·특장업계 등**을 대상으로 전문 튜닝기술 보급 위한 **설명회 개최**

○ **튜닝특화 고교 및 대학**을 선정, 기능·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 지원(기자재 구입, 산학협력 등)

- 국토부, 산업부, 교육부, 고용부 등 관련부처간 협업을 통해 특성화 고교·대학 지원,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

### 4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 및 수출 지원 (산업부)

○ 우수 튜닝부품 전반을 전문취급하는 **온라인 종합쇼핑몰** 개설 지원

○ 코트라 무역관과 연계하여 **해외 전시회**(SEMA show 등) **참여** 지원

* 매년 20여개 우수업 선정, 참가비·통역·바이어 유치 등 서비스 우선 지원

### 5 중소튜닝업체 세제·자금 지원 (금융위 등)

○ 중소 튜닝부품업체가 **기술신용보증기금**으로부터 자금융자를 위한 보증서발급 시 **튜닝부품인증서**를 심사에 활용

* 튜닝부품이 기존 부품 이상의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'기술개발 및 인증실적' 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

○ **특수차 연구개발** 차량에 대한 **세제 혜택** 검토 강구

### 6 튜닝산업 인프라 구축 (국토부, 산업부)

○ **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 개발** (국토부)

- 튜닝·매매·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지하는 **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**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**테마파크**로 육성

-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처리('14.4.10 국회 상정)되면, 현재 추진중인 **고양 자동차클러스터** 등을 지정하고 행정규제 완화 등 지원

<고양 자동차 클러스터 개요>




<아부다비 자동차 테마파크, 21만㎡>



○ 튜닝·모터스포츠 발전 위한 **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** (산업부)

- **(전남) 국제 공인 1등급 F1 경기장과 연계**하여 튜닝부품 개발 및 평가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**R&D 인프라 구축**

* 중소튜닝업체 경기장 이용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 등과 추후 협의

- **(대구) 튜닝장착업체 밀집지역 중심**으로 소비자 중심의 성숙된 튜닝 문화의 확산과 기업 지원을 위한 **서비스 인프라 구축**




[ 전남 R&D 인프라 ]




[ 대구 서비스 인프라 ]



### 7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(R&D) 지원 (산업부, 국토부)

○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의 **기존 영세 튜닝 부품 제조사 대상**으로 내구 신뢰성 확보 등 **『고장진단 및 품질개선型 기술개발』** 지원

* 영세 제조사는 품질문제 발생 시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술이 부족한 바, 제품의 고장원인 분석 지원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 위주

○ **기술력을 보유한 튜닝 제조사 및 완성차 납품 부품업체**는 우수 품질기준에 맞추어 고부가의 **『고성능부품기반型 기술개발』** 지원

* 기획단계부터 개발제품의 품질과 시장진출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선정

| 내 용 | 구분 | 품목 | '15 | '16 | '17 | '18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고장진단 및 품질개선 기술개발 | Tune-up | 머플러 외 15종 | ■ | ■ | ■ | |
| | Dress-up | 등화장치 외 1종 | | | ■ | ■ |
| 고성능 부품기반 기술개발 | Tune-up | 토크 컨버터 외 2종 | | ■ | ■ | ■ |
| | | 너클 외 3종 | ■ | ■ | ■ | ■ |

○ 수요가 다양한 서민·시장형 **Build-up 특장차 개발** 및 안전기준 개발 관련 **R&D 지원**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3. 인식개선을 위한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

### 1 튜닝에 대한 붐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 (국토부)

○ 튜닝분야 전시회인 **'오토살롱**('14.7)' **'튜닝카 경진대회***('14.12)'를 국제행사로 격상 개최

* 예쁜 차 선발대회,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슬라럼 경주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



예쁜차 선발대회

○ **언론 홍보**를 통해 튜닝에 대한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, 규제완화를 반영한 **튜닝매뉴얼 추가 배포**('13.10, '알기쉬운 튜닝 매뉴얼' 3만부 배포)

* 채널A 카톡쇼를 통해 금년 말까지 튜닝전용코너 진행('14.4.24, 첫 방송)

### 2 튜닝업계 역량 결집을 위한 튜닝협회 통합 (국토부, 산업부)

○ 합법적 튜닝 계도와 튜닝업체 권익보호 등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**협회 통합**(자동차튜닝협회+자동차튜닝산업협회)**에 협력**

## Ⅳ. 향후 실행계획

| 분야 | 세부과제 | 세부일정 | 주관부처 | 협조부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1. 튜닝규제 개선 | 구조·장치 변경규정 개정 | '14.6 | 국토부 | |
| |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| '14.8 | 국토부 | |
| | 튜닝 승인절차 간소화 | '14.6 | 국토부 | |
| | 불법튜닝 집중단속 | 연중2회 | 경찰청 지자체 | 국토부 교통공단 |
| | 불법튜닝 홍보포스터 제작·배포 | '14.6 | 국토부 | 지자체 |
| 2. 튜닝제도 기반구축 |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| '14.12 | 국토부 | 산업부 |
| | 튜닝부품 인증시스템 구축 | '15~'16 | 국토부 등 | 기재부 |
| | 튜닝보험상품 개발 | '15.1 | 금융위 | 국토부 |
| |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제도개선 | '15.12 | 국토부 | |
| |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 | '15.12 | 국토부 | |
| | 특장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지원 | '15~'17 | 국토부 | 기재부 |
| | 소량생산 자동차 별도인증제 도입 | '15.12 | 국토부 | |
| | 소량생산 자동차 검사비용 경감 | '15.1 | 국토부 | 기재부 |
| | 완성차 업계 참여 확대 | '15~ | 산업부 국토부 | |
| | 완성차-튜닝업계 기술협력포럼 지원 | '15~ | 산업부 | 국토부 |
| | 튜닝부품업체 기술지도 | '15~ | 산업부 | 국토부 |
| | 모범 튜닝업체 선정/튜닝설명회 | '14.6 | 국토부 | |
| | 튜닝특성화 고교/전문대/대학 육성 | '15~'19 | 국토부 등 | |
| |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 | '15.1 | 산업부 | |
| | 튜닝업체 수출지원 | '15~ | 산업부 | |
| | 중소튜닝업체 세제 및 자금지원 | '16~ | 금융위 등 | |
| |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지정 | '15.12 | 국토부 | |
| | 전남 R&D 인프라 구축 | '14~'17 | 산업부 | |
| | 대구 서비스 인프라 구축 | '14~'17 | 산업부 | |
| | 튜닝 기술개발 지원 | '15~'19 | 산업부 국토부 | |
| 3.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| 오토살롱 개최 | '14.7 | 산업부 | 국토부 |
| | 튜닝카 경진대회 개최 | '14.12 | 국토부 | 산업부 |
| | 튜닝매뉴얼 추가 제작·배포 | '14.10 | 국토부 | |
| | 튜닝협회 통합 | '14.12 | 국토부 산업부 | |



## 참고 1 해외 튜닝시장 사례

### 1. 미국 튜닝시장

□ **튜닝시장 규모('12) : 약 35조원** (자동차시장 약 320조원의 11%)

□ **튜닝 규제**

○ 안전기준(FMVSS)에 위배되지 않으면 **수요자 판단**으로 **자유롭게 튜닝이 가능**하고, 소음·배출가스만 규제(주별로 조금씩 상이)

□ **튜닝 지원제도**

○ (단계별인증) 단계별 제작부분에 대한 **적합성 인증라벨** 부착 및 인증책임 의무를 가지며, 다음 단계 제작자에 **미완성차 정보* 제공**

* 적용기준, 중량, 작업내용, 제작일시, 제작자명 등

○ (보험상품) 애프터마켓 부품정보를 보험견적 프로그램에 활용, 보증수리 문제 관련 Extended Warranty 보험상품 운영

○ (부품인증)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제는 없으며, 안전기준(FMVSS)에 적합한 경우 부품만 튜닝에 사용 가능

- 자동차 및 안전과 관련된 주요부품(브레이크 호스, 전조등, 타이어, 창유리 등)은 **DOT** 또는 **SAE 마크**로 인증 표시

* 인증표시: DOT(Department of Transportation), SAE(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)

□ **튜닝 문화**

○ (불법단속) 소비자가 튜닝한 내용을 정기검사 시 신고를 하면 되나, 정기검사 전에 경찰의 불법단속에 적발되면 **벌금 및 원상복귀**

○ (튜닝협회) 미국 튜닝협회 **SEMA**는 6,380여개 자회사로 구성, 부품산업의 통일된 기준제시 및 올바른 튜닝의 파수꾼 역할 수행

* SEMA(Speciality Equipment Market Association), 1963년 설립

○ (튜닝행사) **SEMA Show**(세계최대 튜닝행사), 나스카 레이싱 등을 통해 튜닝문화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

## 2. 독일 튜닝시장

### □ 튜닝시장 규모('12) : 약 23조원

### □ 튜닝 규제

○ 독일자동차교통청(KBA) **인증을 받은 부품**은 자유롭게 튜닝 허용
(튜닝부품인증서는 등록증과 함께 소지, 없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)

### □ 튜닝 지원제도

○ (단계별인증) 단계별 제작부분에 대한 **EU 통합인증**(ECWVTA)이 필요하며, 제작사별로 변경 범위에 대한 형식승인 필요

* 제작사 별 적합성 확인서 발급, 정보제공 플레이트(제작자명, 승인단계, 차대번호, 허용축중, 허용차량총중량 등) 부착

○ (보험상품) 튜닝된 부품은 보험회사에 **통보 의무화**

* 인증부품은 보험사에서 허가되나, 불법부품은 사고시 보상이 되지않음

○ (부품인증) 별도의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없으며 UN ECE 기준에 적합한 부품(또는 KBA 인증필요)은 튜닝 가능

### □ 튜닝 문화

○ (불법단속) 경찰 단속이나 정기검사 시 적발될 경우 **벌금부과, 원상복귀, 재검사** 필요

○ (튜닝협회) **VDAT**는 튜닝기준 마련, 불법튜닝 단속, 전시회 기획, 튜닝시장 조사 등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수행

* VDAT(Verband der Automobil Tuner), 1987년 NGO설립, 135개 맴버로 구성

- 보험·부품·수리·소비자연합 등이 공동으로 **애프터마켓 단체(ECAR)*** 결성, 애프터마켓부품(튜닝부품)을 공급

* European Campaign for the Freedom of Automotive Parts & Repair Market

* 애프터마켓 부품과 제작사 OEM 부품간 성능, 품질, 가격에 대하여 자율경쟁하고 있으며, 애프터마켓 부품 사용에 대한 보험적용

○ (튜닝행사) **VDAT 주관 각종 모터쇼**(에센, 프랑크푸르트 등), DPM 레이싱 등을 통해 튜닝문화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



## 참고 2 현행 튜닝(구조장치 변경) 규제현황

### 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(제55조)

| 구 분 | | 세부 사례 |
|---|---|---|
| 구조 (7) | ① 길이·너비 및 높이 | 내장·냉동탑, 윙바디, 덤프형, 유압크레인·적하기 |
| | ② 총중량 | 활어운반차, 철스크랩 운반전용, 재활용품 수집차 |
| | ③ 최저지상고 | **승인 불필요(단, 안전기준은 준수 필요)** |
| | ④ 중량분포 | |
| | ⑤ 최대안전경사각도 | |
| | ⑥ 최소회전반경 | |
| | ⑦ 접지부분/접지압력 | |
| 장치 (21) | ① 원동기/동력전달장치 | 원동기, 변속기, 차동장치, 실린더 블럭 |
| | ② 주행장치 | 차축(추가), 축간거리 조정 |
| | ③ 조향장치 | 핸들 규격, |
| | ④ 제동장치 | 브레이크 휠실린더 추가, 드럼↔디스크 |
| | ⑤ 연료장치 | 휘발유, 디젤, 엘피지, cng변경 또는 추가 |
| | ⑥ 차체 및 차대 | 외관변경, 덤프형, 하이루프 |
| | ⑦ 연결장치/견인장치 | 견인장치 |
| | ⑧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| 좌석 증·감, 적재장치 변경(내장·냉동탑 등) |
| | ⑨ 소음방지장치 | 소음기변경 |
| | ⑩ 배기가스방지장치 | 촉매변경 |
| | ⑪ 등화장치 | 전조등, 안개등, 기타 등화 |
| | ⑫ 내압용기 및 부속장치 | cng |
| | ⑬ 기타 부령이 정하는 장치 | 규정 없음 |
| | ⑭ 조종장치 | **승인 불필요(단, 안전기준은 준수 필요)** |
| | ⑮ 완충장치 | |
| | ⑯ 창유리 | |
| | ⑰ 경음기 및 경보장치 | |
| | ⑱ 기타 지시장치 | |
| | ⑲ 기타 시야확보장치 | |
| | ⑳ 속도계 등 기타계기 | |
| | ㉑ 방화장치 | |

## □ 구조·장치 변경 규칙(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사례)

| 구 분 | | 경미한 변경 사례 |
|---|---|---|
| 장치 | ① 원동기/동력전달장치 | ▪ 시동리모콘, 배기관팁, 흡기·배기다기관, 에어크리너, 스노클 등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. 다만, 원동기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<br>▪ 클러치디스크·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 다만, 변속기 종류(수동↔자동)의 변경 제외 |
| | ② 주행장치 | ▪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코일스프링, 쇽업쇼버, 스트럿바 등 주행장치의 변경 |
| | ③ 조향장치 | ▪ 직경이 동일한 핸들, 핸들손잡이, 레버 손잡이 등 조향장치의 변경 |
| | ④ 제동장치 | ▪ 보조브레이크 페달, 가속·브레이크 페달, 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, 정속주행장치,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, ABS 보조장치의 변경 |
| | ⑤ 연료장치 | ▪ 연료절감장치의 장착 |
| | ⑥ 차체 및 차대 | ▪ 범퍼, 에어스포일러, 에어댐, 휀더커버, 후드/원도우 프렉터, 후드스쿠프, 선바이저, 롤바, 루프캐리어, 런닝보드, 수하물 관련부,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, 스키캐리어, 범퍼가드, 그릴가드, 휀더커버, 썬루프, 등화장치 커버, 루프탑바이져, 안테나, 차간거리경보장치, 컨버터블탑용롤바, 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<br>▪ 기본 차체의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|
| | ⑦ 연결장치/견인장치 | ▪ 단순한 전기식 윈치만 설치 |
| | ⑧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| ▪ 승강구 개·폐 방식 변경(수동↔자동) |
| | ⑨ 등화장치 | ▪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제작한 자동차에 장착된 보조방향지시등, 안개등, 후퇴등·차폭등·후미등·제동등으로의 교환. 다만, 위치변경은 제외 |

## □ 승인절차

○ 변경승인 신청/승인 → 변경작업 의뢰 → 작업완료 증명서 교부 → 구조변경검사 신청(승인후 45일 이내) 및 허가(등록증에 내용기재)



# 참고 3 자동차 튜닝(구조장치 변경) 사례

## □ 승인 필요사례

| 구분 | 유형 | 사 례 | |
|---|---|---|---|
| |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 구조 및 장치 | 길이, 너비, 높이, 총중량, 적재장치 |  |  |
| | | · 내장탑, 냉동탑, 윙바디 장착<br>· 적재장치 형상 및 성능 변경 | |
| | 길이, 너비, 높이, 총중량, 적재장치 |  |  |
| | | · 크레인, 적하기 장착<br>· 상·하차를 편의를 위하여 특수한 장치 추가 | |
| 장치 | 승차장치, 등화장치 |  |  |
| | | ·승차정원, 안전표시등, 색상, 어린이 보호장치 추가<br>·특수한 운행목적에 적합하게 차량의 표시장치 변경 | |
| | 소음기 |  |  |
| | | · 소음의 특성을 변경하는 장치로 변경 | |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□ 승인 불필요 사례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유형</th><th colspan="2">사례</th></tr>
<tr><th>변경 전</th><th>변경 후</th></tr>
<tr><td rowspan="6">장치</td><td rowspan="2">주행장치<br>(쇽업쇼버)</td><td colspan="2"> 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·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해 우수한 쇽업쇼버로 교체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차체<br>및<br>차대<br>(썬루프)</td><td colspan="2"> 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· 실내 환기 개선 및 외관변경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등화장치<br>(전조등,<br>안개등,<br>제동등)</td><td colspan="2"> 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· 자기인증 된 타 제품으로 교체</td></tr>
</table>

## ○ 드레스업 튜닝(부착물 장착)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2">사례</th></tr>
<tr><td rowspan="4">드레<br>스업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·자동차 색상 변경</td><td>·타이어 휠 변경</td></tr>
<tr><td> </td><td></td></tr>
<tr><td>·차량 실내 방음장치 추가</td><td>·오디오, 네비게이션, 영상기록장치 설치</td></tr>
</table>



## 참고 4 튜닝 활성화에 따른 경제 기대효과

◈ 자동차 튜닝 시장 : ('12) 5천억/1만명 → ('20이후) 4조/4만명 예상

○ '12년 튜닝시장 규모 : 약 0.5조/1만명 수준

* '12년 A/S시장 규모는 약 3조원, 튜닝시장은 A/S시장의 약 17%
* 인력규모는 취업유발계수 23.1적용(10억원당, 기타사업서비스)

○ '20년 이후 튜닝시장 규모 : 약 4조/4만명 예상

- **경제성장률**, 튜닝에 대한 욕구 증가, **부품시장 성장** 등을 고려시 '20년 튜닝시장 규모는 **약 1.5조원** 규모

- **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**, 제작사 튜닝 활성화에 따른 **튜닝시장 성장가능성**을 고려 시 평균성장률 대비 **2배 이상의 성장** 예상

* '20년 A/S시장 약 5조원, 튜닝시장 1.5조원('06~'11년 평균 경제성장률 5.8%, A/S시장의 30% 보수적 가정)

